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산물질병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주기 규정 〉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38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산생물질병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주기 규정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달회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3.
3. 회 부 일 : 2026. 7.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수산생물질병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주기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u>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5조(종합계획 등) ① ----- ----- ----- ----- ----- <u>종합</u> <u>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해양환경 오염, 신종·변종 질병 유입 등으로 국내 양식생물 폐사(약 33~80%가 감염성 질병 원인) 및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¹⁾, AI 기술 기반의 질병 예측, 데이터 고도화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중장기 R&D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임.

현행법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하고, 수산생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러나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계획 수립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으며, 국가 수산생물 질병 관리 정책 및 R&D 투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법률상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중장기 목표, 중점 추진 방향, 성과 활용계획 등을 보다 체계적이

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보도자료, 「미래환경 변화 대응 수산생물질병 기술혁신 시대 연다」, 2026년 3월 4일.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조(종합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 및 의약품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상용화까지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예산 투입이 필수적인 분야로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상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할 경우, 기술개발의 중장기 목표 설정, 연차별 투자 계획, 성과 환류 체계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국가 방역 기술개발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산생물질병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현황 >

- **(법적근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조
-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개발 및 수산생물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 수산생물 질병 연구에 대한 종합계획
- **(수립주체)**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 (1차)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선진화('11~'15) : '10년 수립
- (2차) 세계 선도형 과학적 질병대응 기술 개발('16~'20) : '16년 수립
- (3차)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생물의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구현('21~'25) : '21년 수립
- (4차)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수산질병 기술혁신('26~'30) : '26년 수립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해당 업무를 위임하여 2010년 제1차 종합계획('11~'15) 수립 이후 제2차('16~'20), 제3차('21~'25), 제4차

(’26~’30)에 이르기까지 이미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행정 실무 및 관행을 법률 규정으로 정립하는 것으로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국가 R&D 및 주요 기본계획·종합계획을 규정한 법률들에서도 5년 단위의 계획 수립 주기를 두고 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법률에서는 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³⁾

법률의 예측가능성·명확성 측면에 볼 때 시행령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종합계획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립·시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및 신종 질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생물질병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제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중인 실무 관행을 감안할 때 법률에 5년 수립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3) 참고 1 「유사 입법례」 참조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
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⁴⁾

문 의 처
02)6788-5422

4)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유사 입법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 2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현황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현황('11~'26.7.31)

(단위: 건)

질병명 \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계
잉어허피스 바이러스병(KHVD)	2	1	-	1	1	-	4	4	7	1	-	-	1	-	1	-	23
참돔이리도 바이러스병(RSVD)	7	15	9	18	23	35	39	76	28	-	10	8	1	7	7	-	283
흰반점병(WSD)	-	4	3	4	-	-	4	3	6	2	2	5	-	-	4	2	39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VHS)	5	11	9	7	6	6	2	-	1	1	2	9	3	2	6	4	74
전염성근괴사증(MN)	-	-	-	-	3	-	-	-	-	-	-	-	-	-	-	-	3
흰꼬리병(WTD)	-	-	-	-	-	-	-	-	-	-	5	-	-	-	-	-	5
십각류무지개 바이러스병(DIV)	-	-	-	-	-	-	-	-	-	-	-	-	-	-	-	1	1
잉어봄바이러스병(SVC)	-	-	-	-	-	2	-	-	-	1	-	1	1	-	-	-	5
급성근위장괴사병(AHD)	-	-	-	-	-	9	1	1	-	-	2	-	15	4	3	-	35
합계	14	31	21	30	33	52	50	84	42	5	21	23	21	13	21	7	468

□ 1종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현황('11~'26.7.31)

(단위: 건)

질병명 \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계
잉어봄바이러스병(SVC)	-	-	-	-	-	2	-	-	-	1	-	1	1	-	-	-	5
급성근위장괴사병(AHD)	-	-	-	-	-	9	1	1	-	-	2	-	15	4	3	-	35
합계						11	2	1		1	2	1	16	4	3	-	40

□ 지역별 발생 현황('11~'26.7.31)

(단위: 건)

연도 \ 지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계
부산	1	-	-	-	-	-	-	1	-	-	1	-	-	-	-	-	3
인천	-	2	1	2	-	1	-	1	1	-	1	1	3	1	1	-	15
강원	-	-	2	1	-	-	2	-	2	-	-	1	-	1	-	-	9
경기	-	-	-	1	-	1	-	-	1	-	-	1	1	-	1	-	6
충북	-	-	-	-	-	-	-	-	1	-	-	-	-	-	-	-	1
충남	-	1	1	1	3	-	3	5	4	1	1	-	1	1	-	-	22
전북	-	1	-	-	-	-	2	2	1	2	-	2	1	1	3	1	16
전남	-	2	3	8	17	35	4	7	4	1	2	8	11	2	6	1	111
경북	2	1	1	-	2	3	2	1	5	-	1	2	-	1	2	-	23
경남	6	14	3	8	6	7	36	67	23	-	14	6	3	2	4	3	202
제주	5	10	10	9	5	5	1	-	-	1	1	2	1	4	4	2	60
합계	14	31	21	30	33	52	50	84	42	5	21	23	21	13	21	7	468

참고 3

제1~4차 수산생물질병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주요내용

□ 제4차 종합계획('26~'30)

기술분야	중점 추진 과제	세부 시행 과제
1. 기후 리스크 대응 강화	1-1. 기후변화 기인 질병 감시 기술 개발	1-1-1. 수산생물 병원체 통합 감시
		1-1-2.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생물 취약성 연구
		1-1-3. 신종 및 현안질병 진단기술 고도화
	1-2. 기후변화 기인 재해·질병 예측 및 저감화	1-2-1. AI·디지털 정보 기반 질병 예측 기술 개발
		1-2-2. 수산재해 저감을 위한 양식환경 개선 연구
2. 예방치료 첨단 기술 개발	2-1. 수산사료 위해요소 관리기술연구	2-1-1. 수산사료의 수산생물 질병 위험평가
		2-1-2. 수산사료 기인 질병 저감 기술
	2-2. 차세대 수산용의약품 플랫폼 개발	2-2-1. 고효율 백신 플랫폼 구축
		2-2-2. 수산질병(현장) 맞춤형 치료 플랫폼 구축
3. 수산 질병 관리 고도화	3-1. 병원체 관리 고도화	3-1-1. 수산생물 병원체 유전체·표준정보 확보 및 데이터 표준화
		3-1-2. 병원체 균주 관리 및 감시·역학 기반 데이터 고도화 시스템 개발
	3-2. 수산분야 생물보안 체계 구축	3-2-1. 수산분야 국가 연구시설 생물안전 체계 구축
		3-2-2. 생물안전 연구동 건립
		3-2-3. 민간 양식장 보안 역량 강화
4. 연구협력 생태계 강화	4-1. 국내 연구 협력 강화	4-1-1. 연구협력체계 고도화
		4-1-2. 다부처 협력
	4-2. 국제 연구 협력 강화	4-2-1. 국제 표준화 선도
		4-2-2. 진단 기술지원 및 공동협력

□ 제3차 종합계획('21~'25)

기술분야	중점 추진 과제	세부 시행 과제
1. 질병관리 체계 고도화	1-1. 수산생물 질병 진단 및 예찰 체계 고도화	1-1-1. 수산생물 질병 예찰 체계 개선 연구
		1-1-2. 병원체 침단 진단기술 연구
	1-2. 주요 질병 모니터링 및 저감화 방안 강화	1-2-1. 주요 양식생물 질병 모니터링 및 저감화
		1-2-2. 수산식물/양서류/해양포유류 모니터링 및 저감화 방안 연구
	1-3. 스마트 디지털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1-3-1. 수산생물병원체 자원 DB 구축에 관한 연구
		1-3-2. 수산생물 진료 통합플랫폼 개발
		1-3-3. 수산생물 헬스케어 시스템 연구
		1-3-4. 미래지향형 질병 제어 시스템 연구
2. 차세대 검·방역시스템 구축	2-1. 수산생물전염병 청정화 기술 개발	2-1-1. 국내발생 수산생물전염병 관리 방안 연구
		2-1-2. 청정국 지위 확보를 위한 수산생물전염병 모니터링 연구
	2-2. 검역 프로세스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2-2-1. 수산생물전염병 정밀 진단기술 연구
		2-2-2. 수입생물 검역 시스템 개발
		2-2-3. 수입위험분석 프로세스 개발
3. 바이오재난 대응 역량 강화	3-1. 신종질병 관련 원천기술 강화	3-1-1. 신종질병의 모니터링 강화 및 진단법 확립
		3-1-2.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산생물질병 대응 연구
	3-2. 신종질병 대응기술 확보	3-2-1. 신종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 방안 연구
		3-2-2. 신종질병 관리 기술 개발
	3-3. 원헬스 개념의 수산생물 질병 대응 기술 개발	3-3-1. 수산생물 매개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3-3-2. 수산생물 매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방안 연구
4. 의약품 개발 및 유효성·안전성 강화	4-1. 고효율 백신 개발 및 검증 프로그램 개발	4-1-1. 수산동물 면역기전 연구
		4-1-2. 고효율 및 고효능 백신 개발
		4-1-3. 백신 효능 검증 프로그램 개발
	4-2. 수산용 의약품 개발 및 유효성, 안전관리 강화	4-2-1. 천연물 소재 기반의 수산용 의약품 개발
		4-2-2. 수산용 의약품 사용 저감 및 유효성 향상 연구
		4-2-3. 수산용 의약품 안전강화 연구
	4-3. 항생제 내성 대응 기술 개발	4-3-1.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연구
		4-3-2. 항생제 내성 검사법 및 저감화 연구
5. 공동 연구 강화	5-1.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5-1-1.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5-1-2. 공적기술지원 활성화 구축
		5-1-3. 국제 표준화 구축
6. 기술 성과관리 강화	6-1. 연구성과 관리 확산 시스템 구축	6-1-1.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및 기술개발 성과 활용

□ 제2차 종합계획('16~'20)

기술분야	중점 추진 과제	세부 시행 과제
1.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기술 및 약품의 개발	1-1.(예방분야) 고효능 백신 개발	1-1-1. 수산생물 면역기전 및 병원체 특성 연구
		1-1-2. 면역증강제 및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물질 연구
		1-1-3. 고효능 백신 개발 및 효능증진 연구
	1-2(예방분야) 수산생물질병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2-1. 수산생물질병 감시 및 대응기술 개발 연구
		1-2-2. 수산생물질병 정보 분석 및 예측 기술 연구
	1-3(진단분야) 수산생물 질병 진단법 고도화	1-3-1. 상존질병 신속진단법 연구
		1-3-2. 진단시약 및 진단기기 개발
		1-3-3. 수산식물질병 진단법 개발
	1-4(진단분야) 기후변화 매개 질병 대응 기술 개발	1-4-1. 신종질병 및 해외감염병 진단법 연구
		1-4-2. 기후변화 매개질병 및 매개체 감시기술 개발
	1-5. (의약품분야) 수산용 의약품 개발 관리	1-5-1. 천연물 유래 항생물질(항생제 대체제) 개발
		1-5-2. 고효능 화학적 제제 개발
		1-5-3. 수산용의약품 평가 및 내성관리 기술 개발
2 수산생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2-1. 수산생물전염병 청정화 기술 개발	2-1-1. 양식환경 및 제어기술 개발
		2-1-2. 전염병 구획화 및 청정화 연구
	2-2. 양식장 생물안전 기술 개발	2-2-1. 수산생물 건강도 평가 기술 연구
		2-2-2. 활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
	2-3. 수산생물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2-3-1. 인체유해가능 병원체 탐색 및 역학 연구
		2-3-2. 잔류물질 스크리닝 및 정량검사법 개발
		2-3-3. 수산생물질병 위험평가기준 및 모델 개발
3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3-1. 산학연 공동연구 효율화	3-1-1. 국내외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3-1-2. 국제 연구교류 및 인적교류 활성화
	3-2. 공적 기술지원 활성화 구축	3-2-1. 공적 방제 기술지원 기반 구축
		3-2-2. 공동연구 발굴 및 연구협력 MOU 체결
		3-2-3. 주변국 공통 질병 유입 감시기술 개발
	3-3. 국가 표준화 구축	3-3-1. 국제 적합성 제도 구축
		3-3-2. 임상연구자원 표준화
4.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4-1. 연구성과 관리·확산 시스템 구축	4-1-1.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4-1-2. 기술개발 성과 활용

□ 제1차 종합계획('11~'15)

분야	세부 추진분야	세부 추진전략
I.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 개발	1. 수산용의약품 안전성 연구	- 항생제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연구 - 미승인 약제, 기전불명 의약품의 규제 관리 - 수산용의약품의 양식어종별 합목적적 사용법 개발
	2. 현장 요구형 단기 기술개발	- 수산동물 질병 발생 유발 기전 규명 - 예방용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 어병 진단기술의 개선 및 개발 - 국내에서 필요성이 요구되는 약제의 개발 및 도입
	3. 중장기 첨단 기술개발	- 수산용 백신 개발 - 백신 투여법 확대 및 효능 증진을 위한 의약품 개발 - 비특이 면역증강제, 천연물 및 신규 약리활성물질의 개발 - probiotics 기술 이용 양식장 수질정화용 미생물 의약품 개발 - PCR primer, 진단용 칩, 진단용 키트의 개발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첨단의학품의 개발
	4. 수산물 안전성 확보기술	- 수산식품 내 유해병원체의 저감화 기술 개발 - 수산물 안전제어기술 관리 실용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식중독 원인 미생물의 분석 및 관리 기술 - 기준 미 설정 어패류 독소 및 위해물질 관리기술 개발
II.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방안	1. 중점추진 위생환경 개선과제 도출	- 양식시설 위생환경관리 표준매뉴얼 가이드라인 개발 - 수산동물 양식시설 위생환경관리 등급판정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우수양식장 평가지표 기술개발 - 수산동물 양식시설 위생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현장교육 및 지도 시스템 개발
	2. 중점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	- 건강 수산동물 생산시스템 모델개발 - 양식시설 환경개선 및 질병저감 기술개발 - 양식환경 오염물질의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양식장 배출수 오염저감 기술개발 - 유기양식 모델설정 기반기술 개발 - 수산동물 위생환경 개선 연구
III.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과의 공동연구 방안	1. 해외자문위원과의 협력강화체제 구축	- 해외자문위원 위촉 - 해외과학자와 공동연구 수행
	2. 현장애로과제 발굴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 운영	「분야별협의체」 운영
IV. 기술개발 성과 활용계획 방안	1. 연구성과 관리체계 구축	-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 연구성과 표준화시스템 운영
	2. 연구성과 활용방안	기술개발 성과 활용
V. 기술개발 자원 조달 및 집행	1. 연구개발 자원 조달 및 집행	연구개발 자원 확보
VI. 기타	1. 연구개발 체제 구축	「수산동물용의약품개발위원회」 설치·운영